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12
----------	-------

발의연월일 : 2025. 9. 24.

발 의 자 : 박균택 · 권철승 · 이건태
박상혁 · 김기표 · 맹성규
황명선 · 정준호 · 박홍배
한민수 · 한준호 · 박해철
의원(12인)

제안이유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공탁물보관자의 지정)”을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품”을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탁금을”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으로, “매년 공탁금”을 “매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탁금”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 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 업자를 지정한다.	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① ----- ----- <u>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u> <u>하는 법원보관금</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연금) ① <u>공탁금을</u> 보관 하는 은행은 <u>매년 공탁금</u> 운용 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 연할 수 있다.	제19조(출연금) ① <u>공탁금 또는</u> <u>법원보관금을</u> ----- <u>매년 그</u> --- ----- -----.
② <u>공탁금을</u>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 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u>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u> --- ----- ----- ----- -----.